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305
----------	-------

발의연월일 : 2025. 11. 17.

발 의 자 : 강민국 · 이상희 · 김상훈
박상혁 · 허 영 · 정동만
강준현 · 서명옥 · 박덕흠
민병덕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금을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장례 등 서비스를 공급 받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 업자에게 계약 시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체결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선불식 할부거래의 경우 소비자의 선수금 납입과 서비스 제공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대상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4 신설 등).

주요내용

- 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출·공개하는 회계감사 보고서의 작성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2).
- 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폐업 등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사유의 발생 시 시·도지사의 공고를 의무화함(안 제27조).
- 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4 신설 등).
- 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하여금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록을 보존 및 열람 제공하도록 함(안 제33조 등).
- 마.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위법행위 전반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 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공제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선수금”이란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을 말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개)”를 “(회계감사 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공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감사 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이라 한다)”을 “선수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4(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공개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8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
2. 제36조에 따라 공개하는 부당행위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계약체결일, 납입한 선수금 내역, 지급의무자 등 소비자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세부 정보의 제공
4. 소비자피해보상의 접수·진행 등 소비자피해보상금 수령의 절차·방법에 관한 정보의 제공
5. 그 밖에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재화등에 대한 선택, 피해 예방 또는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기관·단체의 장,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지급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성명·전화번호·납입내역 등 소비자의 구별과 계약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소비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조회·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

2. 그 밖에 제45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체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 제목 “(거래기록 등의 열람)”을 “(거래기록 등의 보존·열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재화등의 거래기록·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 및 계약해제에 관한 기록 등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언제든지 소비자가 쉽게 해당 기록을 열람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
· 범위 · 기간 및 보존 · 열람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제10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라. 제27조의5제3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35조제1항 중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을 “한국소비자원”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9조”를 “제3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정조치”를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으로 한다.

제53조제2항제10호 중 “제33조에 따른 소비자의”를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존하거나”로, “체결내용”을 “체결내용 및 계약해제에 관한 기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제11호 중 “체결내용을”을 “체결내용 및 계약해제에 관한 기록 등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8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③ 제31조제3항에 따른 징계·해임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4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래기록 등의 보존·열람에 관한 적용례) ①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록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u>5의2. “선수금”이란 소비자로부</u> <u>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u> <u>는 재화등의 대금으로서 미리</u> <u>수령한 금액을 말한다.</u>
6. ~ 9. (생 략) <u>제18조의2(회계감사 보고서의 제</u> <u>출 및 공개) ①·② (생 략)</u> <u><신 설></u>	6. ~ 9. (현행과 같음) <u>제18조의2(회계감사 보고서의 작</u> <u>성·제출 및 공개) ①·② (현</u> <u>행과 같음)</u> <u>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u> <u>사항 외에 회계감사 보고서의</u> <u>작성·제출 및 공개에 관하여</u> <u>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u> <u>한다.</u>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8조에 따라 등록할 경우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이라 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 ----- <u>선</u> <u>수금</u> ----- ----- ----- ----- -----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
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
을 체결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 ⑤ (생략)

<신설>

⑥ ~ ⑫ (생략)

<신설>

-----.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
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⑦ ~ ⑬ (현행 제6항부터 제12
항까지와 같음)

제27조의4(선불식 할부거래 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공
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
래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
하고 공개하기 위하여 정보시스
템(이하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
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불식 할부거래 정
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8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정
보의 제공

2. 제36조에 따라 공개하는 부

당행위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계약체결일, 납입한 선수금
내역, 지급의무자 등 소비자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
른 세부 정보의 제공

4. 소비자피해보상의 접수·진
행 등 소비자피해보상금 수령
의 절차·방법에 관한 정보의
제공

5. 그 밖에 선불식 할부거래에
서 소비자의 재화등에 대한
선택, 피해 예방 또는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
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
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
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
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
련 기관·단체의 장, 선불식 할
부거래업자 및 지급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
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
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성명·전화번호·납입내역 등 소비자의 구별과 계약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소비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조회·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

2. 그 밖에 제45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체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제33조(거래기록 등의 열람) <u>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화등의 거래기록·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을 언제든지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u> <u><신 설></u> 제34조(금지행위) <u>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호, 제9호, 제13호 및 제14호는 모집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u> 1. ~ 9. (생략) 10.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	<u>사항 외에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u> 제33조(거래기록 등의 보존·열람) ① <u>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재화등의 거래기록·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 및 계약해제에 관한 기록 등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언제든지 소비자가 쉽게 해당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u> ② <u>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범위·기간 및 보존·열람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34조(금지행위) ----- ----- ----- -----. ----- -----. 1. ~ 9. (현행과 같음) 10. -----
---	---

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다만,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 다. (생략)

<신설>

라. (생략)

11. ~ 18. (생략)

제35조(위반행위의 조사) ① 공정
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제27조의5제3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
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를 포함한다)에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
우

마. (현행 라목과 같음)

11. ~ 18. (현행과 같음)

제35조(위반행위의 조사) ① ----

시장·군수·구청장-----

-----.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
----- 한국소비자원 -----

⑦ (현행과 같음)

제40조(영업정지 등) ① -----

-----.

1. 제39조 제1항-----

니하는 경우 <u>가. 제18조제3항 또는 제5항</u> <u>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u> <u>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u> <u>경우</u> <u>나. 제34조제1호부터 제3호까</u> <u>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u> <u>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u> <u>금지행위를 한 경우</u> 2. <u>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u> <u>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정조치</u> 만으로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 지하기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 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③ (생략) 제53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9. (생략) 10. <u>제33조에 따른 소비자의 열</u> <u>람에 제공하는 재화등의 거래</u> <u>기록·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u> <u>약등의 체결내용을 거짓으로</u> <u>작성한 자</u>	----- <삭 제> <삭 제> 2. <u>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u> <u>치명령</u>-----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5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9. (현행과 같음) 10. <u>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존하</u> <u>거나</u> ----- ----- ---- <u>체결내용 및 계약해제에</u> <u>관한 기록 등</u>-----
--	--

11. · 12. (생략)

<신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0. (생략)

11. 제33조에 따른 재화등의 거래기록·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을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자

④ · ⑤ (생략)

<신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

11. · 12. (현행과 같음)

③ 제31조제3항에 따른 징계·해임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

-----.

1. ~ 10. (현행과 같음)

11. -----

----- 체결내용 및 계약해제에 관한 기록 등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

⑤ · 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삭제>

<u>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u> ⑦ <u>제4항</u>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⑧ 제1항부터 <u>제5항</u>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u>제5항</u>----- ----- ----- -----. ⑨ ----- <u>제6항</u>----- ----- -----.
--	---